

##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안내 (2023.5.26.)

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 (제23조 관련)에 따라 해당 시험 응시 목적으로 외출이 가능함을 안내합니다.

- 시험개요 -

- 시험명: 2023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규직원 채용 면접시험
- 주최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
- 시험일시: 2023.5.30.(화)~6.13.(화), 09:30~18:00 예정
- 응시인원: 1,292명(전국 단위)
- 시험장소: 코엑스(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3)

| <안내사항>   |  |
|--|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대상자: 입원치료·자가치료·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·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</li><li>○ 외출 시 주의사항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외출시간: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(이동시간 포함)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</li><li>- 이동방법: 도보, 자차, 방역택시 등(대중교통 이용 금지)</li><li>- 주의사항: 마스크(KF94 또는 동급 이상) 상시 착용,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, 시험장소로 직행,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</li></ul></li><li>※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</li><li>※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,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</li></ul> |  |